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9. 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15일, 허정행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9월 2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허정행 의원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(안 제3조)

-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시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
- 재물조사 대상 물품,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의 경우 제외

○ 공개 범위(안 제4조)

-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
-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
-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며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

-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합산 명기, 교체 발주 시에도 설치비용 공개
-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시 건립비용 공개

○ 공개방법 및 내용(안 제5조)

공 공 시 설 물	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
1. 시설물명	1. 공사명
2. 설치일시	2. 공시기간
3. 시공업체	3. 발주기관의 명칭
4. 설치비용	4. 설계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5. 관리부서	5. 감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	6.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
	7. 건립비용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

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의견으로는

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비용 등 표시의무화는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6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을 개발하여 공유재산의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시설에 표지판 등의 형태로 제작부착하여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